

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17나2653 상표권침해금지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코. 엘티디 (A Co. Ltd.)

미합중국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방세희, 임보경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A코리아

대표자 사내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승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환, 류재영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허왕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52508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3.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는,

- 1) '주식회사 A코리아'를 상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 및 이들 제품에 관한 포장, 광고물, 간판, 표찰에 표시하거나 위 표장이 표시된 제품 및 포장, 광고, 간판, 표찰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 3)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각 영업에 사용하거나, 위 영업과 관련된 포장, 광고물(인터넷 포함), 간판, 표찰, 거래서류, 회사용품, 메뉴판, 점포 내·외부 장식, 유니폼, 컵홀더, 냅킨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 4)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창고, 공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 그 포장, 광고물(인터넷 포함)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영업에 관한 간판, 표찰, 거래서류, 회사용품, 메뉴판, 점포 내·외부 장식, 유니폼, 컵홀더, 냅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을 제거하고,

5) 피고 D과 연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와 공동하여, 137,932,144원 및 그중 63,897,79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나머지 74,034,35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6) 위 주식회사 E와 공동하여 353,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7) 미합중국 통화 5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와 연대하여,

1) 위 1.가.5)항의 137,932,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위 1.가.6)항의 돈 중 미합중국 통화 21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1)~3)항, 피고 주식회사 A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회사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창고, 공장에 보관 또는 전시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 제품, 그 포장, 광고물(인터넷 포함) 및 별지1 목록 기재 각 표장이 표시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영업에 관한 간판, 표찰, 거래서류, 회사용품, 메뉴판, 점포 내·외부 장식, 유니폼, 컵홀더, 냅킨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 중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137,932,144원 및 그중 63,897,79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나머지 74,034,353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각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는 E와 공동하여 541,54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541,547,500원 중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3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화 14,370.6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미화 5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이 법원에서 위 541,547,500원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계약에 기초한 청구를 선택적¹⁾으로 추가하였고, 2019.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²⁾

나. 피고 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D

제1심판결 중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

1) 원고는 '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에 기초한 청구와 계약에 기초한 청구는 양립 가능한 청구이므로,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적 청구로 본다. 한편 원고는 2019.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구하던 미화 475,000달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환율로 환산하여 541,547,500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원고가 당심에서 2019.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항소취지도 그 취지에 맞게 변경된 것으로 선해한다.

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 D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11. 13.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D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D이 2018. 6. 4.에 이르러서야 소장, 제1심판결문 등 소송기록을 송달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6. 8.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의 추완항소는 피고 D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제4쪽 제2행부터 제11쪽 제4행

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4행의 "원고와 피고 회사는"을 "원고와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부터 제8쪽에 걸쳐 있는 표에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을 추가하고,³⁾ 위 표 중 제6쪽 제12행의 "합리적인 여부"를 "합리적인 여비"로 고친다.

1. 용어의 정의

“계약연도”는 본 계약 체결일에 개시되는 각 12개월의 기간(최종일을 제외함)을 의미한다.

“본건 지식재산권”은 원고가 고용하는 제3자에 의하여 창출되고 본건 상표 또는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특정 제품, 조리법, 패턴, 색상 및 소매점 및 비품 디자인, 권원, 상표, 명칭, 로고, 표상, 트레이드 드레스, 저작권, 삽화, 라벨, 광고 및 기타 판촉자료, 발명품, 영업비밀(특허 대상 여부를 불문함), 특허 및 출원중 특허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임시매장”은 거대 재벌 또는 백화점, 박람회 관련 홍보, 후원, 요식 조달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업무 또는 활동을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는 매장을 의미한다. 원고는 그의 단독 재량대로 특정 유형의 매장이 “임시매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

5. 의무 및 약정

5.1 원고의 지원. 원고는 계약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모든 노하우, 전문지식 및/또는 자료/서류를 피고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제조, 시판 및 판매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건 지적재산권에 접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할 의무는 없다.
...

▣ 제1심판결서 제10쪽 제15행의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를 "2017. 12. 21. 상고가

3)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는 취지이다.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11쪽 제2행의 [인정근거]란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상호사용 금지 청구

피고 회사에 대한 2015. 11. 3.자 해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 회사는 더 이상 '주식회사 A코리아'를 상호로 사용할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3조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상호의 사용 금지를 구한다.

2) 침해금지 등 청구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침해상표 또는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블로그 등 온라인과 A 각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9.7조 또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침해의 금지 등을 구한다.

3) 금원 지급 청구

가) 이 사건 계약 4.3조에서 정한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E로 하여금 2015. 1. 9.무렵부터는 이 사건 침해상표를, 2016. 9. 27.무렵부터는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한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로서 이 사건 계약 4.3조에 따른 로열티 상당액 137,932,144원[= (1,277,955,838원 + 1,480,687,061원) ×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4.2조에서 정한 신규 매장 수수료 상당의 금원 청구

(1) 주위적 주장: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는 E와 공모하여 19개의 신규 매장[① 신사가로수점 1개, ② G 입점 매장 9개(잠실점, 분당점, 강남, 부산서면, 광복, 대구, 울산, 대구상인, 센텀), ③ H 강남점 입점매장 1개, ④ I 입점매장 2개, ⑤ 그 밖의 매장 6개(J, K, L, M, N, N)]을 개설한 후 그 매장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 및 변경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로서 이 사건 계약 4.2조에 따른 신규 매장 수수료 541,547,000원[=미화 475,000달러(=미화 25,000달러×19) × 1,140.1원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약정금 청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보증인인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4.2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지 이전에 직접 또는 이행보조자인 E를 통하여 개설한 12개의 신규 매장 수수료에 해당하는 미화 300,000달러(= 미화 25,000달러 × 1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률비용 및 출장비 청구

4) 불법행위 시점인 2015. 11. 3.무렵의 환율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법률비용 미화 7,921.14달러, 원고 측 출장비 미화 21,449.52달러를 합한 29,370.66달러에서 원고가 신규 매장 수수료로 초과 지급받은 미화 15,000달러를 공제한 미화 14,370.66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물품대금 청구

피고 회사는 2015. 3. 무렵 원고로부터 미화 580달러 상당의 케이크 몰드 등을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58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여부

1)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와 이 사건 각 상표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참조).

또한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

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1, 2항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1, 2항은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하다.


(2)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3항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3항("M")은 이 사건 제2상표에서 'A' 문자 부분을 삭제하고 도형 부분("M")만을 남긴 것으로, 그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제2상표의 도형 부분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도형 부분은 영문자 'M'을 변형하여 도안한 것으로 마치 로마 숫자 "I, V, I"이 결합한 형태를 이루어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 배경의 월계수 잎 도안보다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요부로 볼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까지 고려하여 보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4, 5항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4, 5항(4. "", 5. ")은 이 사건 각 상표에 'CAKE BOUTIQUE' 또는 'CAKE BOUTIQUE NEW YORK'을 결합한 상표인데, 'CAKE BOUTIQUE'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수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NEW YORK'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4, 5항은 위 부가적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진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모두 'A'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침해상표 중 제4, 5항도 이 사건 각 상표와 서로 유사하다.

(4)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는 'M' 형태의 도안 굵은 선 부분 왼쪽 측면에 밝은 색 선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입체감을 조금 더 강화한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상표 배경 부분의 월계수 잎 도안과 이 사건 침해상표의 배경 부분이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모두 얇고 옅은 색의 선이 복잡하게 이어진 배경 정도로만 인식되어 그 구체적인 선의 모양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갑 제46~5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에 E는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기존의 A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또한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이 사건 제2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는 이 사건 제2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가 사용된 카페업은 이 사건 각

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과 동일하고, 지정상품인 빵, 커피, 차와 동종·유사성이 있다.

3) 피고 회사의 정당한 권원 여부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① 피고 회사에게 계약 위반 사유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 또는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②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 사유 발생 후에도 피고 회사와 계속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E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5. 1. 9. E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 E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에 기초하여 기존 피고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다가 2015. 2. 6. 원고의 서면 승인 없이 A 신사가로수점을 개점하여 케이크 등을 판매한 사실, 피고 D이 명의수탁자인 O을 통하여 보유하던 피고 회사 주식을 C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이 C에게 넘어간 사실, 이 사건 계약 9.4조는 사전 서면 승인 없는 신규 매장 개장을, 9.5조는 피고 회사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변경을 이 사건 계약의 즉시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사유 등을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2015. 11. 3. 무렵 피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먼저 A 신사가로수점이 신규 매장이 아니라 임시매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제1항 '용어의 정의'에서 "'임시매장'은 거대 재벌 또는 백화점, 박람회 관련 홍보, 후원, 요식조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 또는 활동을 위하여 임시로 운영되는 매장으로서 원고가 그의 단독 재량으로 특정 유형의 매장이 '임시매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A 신사가로수점이 위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는 다시, ① 피고 회사는 A 신사가로수점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유선으로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2015. 3. 4. 원고에게 이메일로 POS 패스워드의 변경을 통지하면서 "최근에 신사점 오픈하면서 바뀌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적어도 그 무렵 원고가 신사가로수점을 개장한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한 점, ② C이 2014. 10. 무렵부터 2015. 4. 무렵까지 원고의 대표자를 여러 차례 만나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이 자신에게 양도된 것을 통지하여 원고가 이를 알았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회사와 양해각서(MOU) 및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1. 3.에서야 해지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7~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신사가로수점을 개장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가 신사가로수점의 개장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신사가로수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서면 승인을 받은 신규 매장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가 2015. 3. 4. 신사가로수점의 개장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는 개장일인 2015. 2. 6.이 경과한 이후에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 제9.4조(a)에서 정한 해지 요건인 "원고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매장을 개장함."에 해당한다.

(다) 을가 제8~12호증 등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이 원고 측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D으로부터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원고 측에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자신을 사업 조언자(a business advisor)로 원고 측에 소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도 C을 피고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나 에이전트 정도로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종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 동의 또는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라이선스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을 원고와 협의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 체결행위를 동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2.2조는 피고 회사에게는 재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그러한 권한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면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13.5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를 매각, 이전,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재라이선스 계약이 서면이라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체결될 수 있다고 사전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동의나 추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타난 원고의 의사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재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 사실을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동의하거나 추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2015. 7. 28.무렵에는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 체결 행위로 인한 계약위반을 경고하였으며 2015. 11. 3.무렵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도 이 사건 재라이선스 계약을 동의하거나 추인한 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4) 소결

피고 회사가 E로 하여금 기존의 A 각 매장을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매장까지 개설하여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위 각 매장에서 사용하

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E의 설립 경위 및 피고 회사와 E 구성원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회사는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다. 상호사용 금지청구 인정 여부

이 사건 계약 제8.3조가 "피고 회사는 'A' 상표를 그의 회사명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시 즉시 'A'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회사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9.7조(a)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상표 및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즉시 종료되고, 피고 회사는 그 이후 원고 브랜드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또는 종전 피고 회사라고 자칭하거나 이 사건 각 상표 또는 이 사건 각 상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한 사실, 원고가 2015. 11. 3.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위 약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⁵⁾

라. 침해 금지 청구 및 조성물 폐기 청구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을 통하여서도 피고 회사가 계속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금지 및 폐기를 명할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상표법 제65조 제1항에 따

5) A 부분이 이 사건 상호의 본질적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상호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호 전부의 사용이 금지된다.

라 주문 제1.가.2),3)항과 같이 이 사건 침해상표를 사용하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문 제1.가.4)항과 같이 피고의 사무소 등에서 보관 중인 제품이나 영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 등에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침해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간판 등의 영업시설물까지 폐기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제품 등에 표시된 이 사건 침해상표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제품 자체나 영업시설물 자체의 폐기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가 전부 인정되었으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가 E와 공동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추정될 뿐 아니라(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166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⁶⁾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6) 2016. 1. 9.부터 2016. 9. 27.까지는 이 사건 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선택적 관계이다), 2016. 9. 28.부터 2016. 12. 31.까지는 이 사건 제2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침해자가 상표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상표권자와 제3자와 사이에 상표권 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유추적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참조).

나) 로열티 상당액 청구

이 사건 계약 제4.3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표 사용에 관하여 로열티로서 총 매출액의 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3조를 E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E의 총 매출액 5%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2015년 매출액은 1,277,955,838원, 2016년 매출액은 1,480,687,06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출액은 E의 케이크 및 제빵재료 판매매출액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매출액은 이 사건 침해상표 및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상당액인 137,932,144원[$(1,277,955,838\text{원} + 1,480,687,061\text{원}) \times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피고 회사의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

다) 신규 매장 수수료 부분 청구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6~27, 46~54, 64~7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기재된 신규 매장 수수료 역시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은 제4조 '대가, 보고 및 지급'의 항목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대가로 제4.1조에서⁷⁾ 최초 수수료를, 제4.2조에서 신규 매장 수수료를, 제4.3조에서 로열티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약정 형식에 비추어 신규 매장 수수료를 로열티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신규 매장 수수료는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

(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표권통상계약서(갑 제40호증)를 보더라도, 사용대가는 정액인 선급금과 매출액과 연계된 경상로열티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상표권통상 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최초 수수료와 신규 매장 수수료는 선급금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신규 매장을 개설할 경우 이 사건 각 상표는 매장의 간판, 내부의 인테리어, 매장의 식기, 컵, 홍보자료 등에 다수 사용될 수밖에 없고 또한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제품 내지 서비스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여러 매장들에서 사용될 경우 그 상표에 내재된 식별력이나 명성의 가치가 소모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신규 매

7) 4.1. 최초 수수료. 본 계약일부터 7 영업일 내에, 사용권자는 A에게 최초 수수료 미화 50,000달러(환불 불가) 및 본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과 관련하여 A에게 발생한 합리적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거래통념상 비합리적이거나 신규 매장 개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가맹점 계약(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계약 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노하우, 전문지식 등을 가맹점 계약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신규 매장 개설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정액금을 상표 사용의 대가라고만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부터 가맹점 계약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Licence Agreement)이고, 특히 이 사건 계약 제2.5조 '당사자들의 관계'에는 "A과 피고 회사 간의 관계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허여자와 피허여자의 관계이다.(중략) 본 계약은 계약지역의 법률에 따른 프랜차이즈를 구성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에 충실의무에 의한 관계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가맹점 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5.1조가 'A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A은 계약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모든 노하우, 전문지식 또는 자료, 서류를 사용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와 같이 추상적인 원고의 지원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을 제조, 시판 및 판매하고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건 지적재산권에 접근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의무는 없다."라고 하여 원고의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 제5.2조⁸⁾는 원고가 신규 매장을 승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신규 매장에 대하여 인테리어 방법이나 레시피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5.1조에 있는 원고의 추상적인 지원의무를 신규 매

8) 5.2조 매장. (중략) 각 매장은 계약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지 A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건설 및/또는 개량되어야 한다. (중략) 사용권자는 각 매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A이 그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모든 수리, 개량 및 변경 작업을 실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장 수수료의 지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 회사는 신규 매장 개설로 인하여 상표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 매출액도 증가하여 로열티도 증가할 것이므로 신규매장 수수료를 별도의 상표 사용의 대가라고 본다면 중복 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매장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상표 사용이 증가하는 것과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매장이 설치되어 상표 사용이 증가하는 경우 그 대가의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표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얻어 신규 매장을 개설하였다면 피고 회사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러한 허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를 부인한다면 이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현저히 배치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1, 64~72, 7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가 2015. 2. 6.경 신사가로수점을 개점하고,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G 입점 매장 9개(잠실점, 분당점, 센텀시티, 상인점, 대구점, 일산점, 강남점, 부산본점, 울산점), H 강남점 입점매장 1개, I 입점매장 2개 등 총 13개의 신규 매장을 개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와 별도로 J, K, L, M, N, N 등 6개의 신규 매장을 개장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⁹⁾ 피고 회사는 E와 공동으로 위 13개 신규 매장에 대한 수수료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 회사가 배상할 구체적인 신규 매장 수수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라

9) 원고는 신사가로수점과 J가 별도의 신규 매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J가 신사가로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다투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신사가로수점과 별도의 매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연도 동안 미화 10,000달러를, 그 후 각 계약연도에 대하여 미화 25,000달러의 신규 매장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의하면, "계약연도"는 본 계약 체결일에 개시되는 각 12개월의 기간(최종일을 제외함)을 의미하고 이 사건 계약이 2014. 4. 17.에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5. 4. 17. 이전에 개설되는 신규 매장에 대하여는 미화 10,000달러를, 그 이후에 개설되는 신규 매장에 대하여는 미화 25,000달러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을 원고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상표 사용대가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표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신규 매장 수수료는 미화 25,000달러이나 국내에 이 사건 각 상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신규 매장 개설을 촉진하고 계약 상대방과의 신뢰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첫 해 미화 10,000달러로 계약하게 되었으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E에게는 미화 25,000달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연도 첫 해 감액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 주장처럼 계약연도 첫 해에는 국내에서 이 사건 각 상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첫해 미화 10,000달러가 부당하게 과소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신규 매장 수수료로 353,431,000원[= 미화 310,000달러{미화 10,000달러(신사가로수점) + 300,000달러(=미화 25,000달러 × 12개 점포)} × 1,140.10¹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¹⁾

10) 불법행위의 종료일인 2016. 6. 30.의 환율이 1,153.50원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3.자 환율 1,140.10원보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3자 환율을 적용한다.

11) 신규 매장 수수료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그 인용된 금액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미화 300,000달러 청구금액을 상회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

다) 피고 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① F에게 여러 차례 로열티 청구, 사용권자에 대한 불이행 통지, 매출 확인용 POS 정보 제공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발송하였고, ② F이 2015. 3. 4. 보낸 POS 정보 등이 담긴 이메일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5년 4월경 대리인을 통해서 신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 또는 E에게 정당하게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외관을 스스로 형성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또는 원고와 E 사이에 상표권 사용에 관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E의 상표권 사용을 동의하거나 추진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범위를 감경할 정도의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는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137,932,144원 및 그중 63,897,791원(2015년도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74,034,353원(2016년도 매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지 아니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353,4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0. 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¹²⁾

바. 계약상 비용청구: 법률비용 및 출장비 부분

1) 법률비용 청구

가) 원고의 주장 내역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법률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일시	내용	시간
1	2014. 10. 21.	Ken과 현황 및 전략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고 동 안건을 유선으로 논의함. Suh 등과 현황 및 전략에 관한 회의를 실시함	4.5
2	2014. 10. 22.	Suh와 유선으로 MOU 관련 회의를 하고 Ken과 유선으로 동의제를 논의함	0.6
3	2014. 10. 23.	Suh와 MOU 관련 서신을 교환하고, A과 MOU 관련 서신을 교환함. MOU 내용을 수정하고 Ken과 Suh에게 전송함. Suh와 유선으로 MOU 및 송금 관련 내용을 논의함. Ken 및 Suh와 MOU 체결 관련 서신을 교환함	3.5
4	2014. 10. 24.	체결된 MOU를 전송하고 Suh 및 Ken과 사용료 인보이스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Suh와 동의제를 유선으로 논의함	0.5
5	2014. 12. 5.	Ken과 미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현황과 전략을 논의함	0.8
6	2014. 12. 9.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S. Lee로부터 검토 및 분석 받음.	0.3
7	2014. 12. 12.	S. Lee와 사용료 및 현황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0.3
8	2014. 12. 24.	한국의 현황과 관련하여 Ken과 Victor의 회의를 실시하고, 동의제를 분석하고 준비함	1.0

12) 원고에 대한 상표권위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이와 같이 일부 인정된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표법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인용한 범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9	2014. 12. 28.	현황에 관한 이메일을 검토함	0.3
10	2014. 12. 29.	K. Suh와 유선으로 현황을 논의함. Ken과 동 건을 유선으로 논의함. 미결 안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함.	1.0
11	2015. 2. 3.	Suh와의 전화 및 전략에 대해 Ken과 유선 회의를 실시함	0.7
12	2015. 2. 12.	서경한과 유선으로 한국 내 현황과 사용료 지급을 논의함. Ken과 동 의제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1.0
13	2015. 2. 24.	Y. Kim과 S.Lee와 유선으로 현재 현황 및 A의 입지와 전략을 논의하고 의제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체납액에 관한 이메일을 검토 및 분석함. Ken과 위에 관한 유선 회의를 실시함. Y.Kim 및 S.Lee와의 유선 연결을 준비하고 Ken과의 연결을 준비함.	1.8
14	2015. 3. 2.	Y. Kim, H. Ryu와 유선으로 A Korea의 현황과 향후 진행할 단계를 논의함.	0.5
15	2015. 3. 3.	한국계정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V. Kim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검토하고 동 의제에 대해 S. Lee와 서신을 교환함	0.4
16	2015. 3. 4.	S. Lee와 사용료 지급 및 미결 현안에 관해 서신을 교환함	0.6
17	2015. 3. 5.	본인과 S. Lee 그룹이 나눈 대화에 관해 Ken과 서신을 교환함	0.2
18	2015. 3. 9.	Ken과 유선으로 한국 내 현황 및 지급을 논의함. S. Lee와 미결 현안에 관해 서신을 교환함.	1.0
19	2015. 4. 1.	Ken과 서신으로 현황에 관한 현황 및 분석 내용을 교환함. S.Lee와 동 안건에 대한 서신을 교환함. 매장 설치수수료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A. Smith와 서신을 교환함.	1.2
20	2015. 4. 9.	S. Lee와 미결 현안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Claudine과 은행 계정 조정에 관한 서신을 교환함. Ken과 유선으로 동 의제 및 A Korea와의 미결 현안을 논의함. S. Lee가 송부한 지급 이력을 분석함.	1.7
합계		7,921.14 달러[= 21.9시간 × 360 달러/시간 × (1 + 세금 4.712%)]	21.9

나) 판단

갑 제6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1.부터 2015. 4. 9.까지 소외 P 변호사로부터 피고 회사와의 법률관계 등으로 자문을 받고 위 표에 기재된 내역을 포함하여 미화 15,832.45달러(=수수료 15,120달러(360달러×42시

간)+세금 712.45달러(=15,120달러×4.712%)(GE TAX)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표 중 순번 4(0.5시간), 7(0.3시간), 12(1시간), 13(1.8시간), 16(0.6시간), 18(1시간), 19(1.2시간), 20(1.7시간)만이 이 사건 계약 13.8조에 따른 '미지급 채무를 수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¹³⁾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¹⁴⁾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총 8.1 시간의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미화 3,053.40달러[= 2,916 달러(360 달러 × 8.1) + 134.70 (=2,916 * 4.712%)(GE TAX),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라고 인정된다.

2) 출장비 청구

이 사건 계약 5.8조가 "제3자 문의"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회사는 계약 지역 외부에서의 원고 및 계약제품 관련 잠재적 사업 기회에 관한 모든 제3자의 문의사항들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전달할 것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최소한 매년 3회 내지 4회의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고 회사가 합리적인 여비(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비용) 및 숙박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13) 원고는 P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양해각서(MOU)의 체결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 부분도 법률비용 상당액으로 청구하면서 그 청구의 근거로 양해각서에서 피고 회사의 사용료 지급채무 미이행 사실을 명시하고, 위 채무가 상환되는 것을 양해각서 효력의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양해각서는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과 이를 위한 채무 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계약 13.8조에 따른 수금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14) 위 내역 중 '현황', '전략', '대화', '미결 현안' 부분은 그 자체로는 미지급된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지 알 수 없고, 적어도 그 내용에 '사용료', '채납액', '지급', '지급이력'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미지급된 수수료를 수금하는 부분과 관련된 법률자문으로 보인다.

사건 계약 제1조가 '계약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사용한 항공권 비용 및 숙박비가 이 사건 계약 5.8조에 기재된 한국 외부에서의 제3자 문의에 관한 회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2차 신규 매장 수수료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를 더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계약상 비용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선지급받은 미화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인용금액(미화 3,053.40달러)이 공제할 금액 미화 15,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 물품대금 청구

갑 제7, 5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 3월경 미국에 있는 원고 공장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한 C에게 레드벨벳 틀 18개, 스폰지 틀 30개를 미화 580달러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미화 58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화 58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¹⁵⁾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15) 원고는 갑 제7호증을 근거로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기록상 갑 제7호증이 언제 원고에게 도달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5. 7. 1.부터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6. 21.까지¹⁶⁾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①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액 137,932,144원, ② 이 사건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12개 매장[G 입점 매장 6개(잠실점, 분당점, 강남점, 부산서면, 광복, 대구), H 강남점 1개, I 입점매장 2개(수원, 분당), 신사가로수점 1개, J, M)에 대한 신규 매장 수수료 미화 300,000달러(=25,000달러×12개),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비용 및 출장비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미화 14,370.66달러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범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계약 제8.3조는 이 사건 각 상표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계약 제8.5조, 제9.7조는 위와 같은 상표사용금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이후에도 존속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 제

16) 원고는 제1심에서는 법률비용, 출장비, 물품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초과지급받은 신규 매장 수수료 미화 15,000달러를 공제하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률비용과 출장비를 합한 금액에서 신규 매장 수수료 미화 15,000달러를 공제한 금액과 물품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서 인정한 법률비용과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미화 15,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이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금액 지급의 의무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12.3조가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게 되는 모든 의무 및 채무를 최종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의 채무(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후의 계약상의 책임)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상표를 침해한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피고 D 역시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D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지게 되는 로열티, 신규 매장 수수료, 법률비용 등 각종 계약상의 금전지급채무와 ②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손해배상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1)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상표사용의무를 위반하여 E로 하여금 무단으로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이 사건 침해상표와 이 사건 변경된 침해상표를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인정한 손해배상액 중 로열티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액 137,932,144원은 피

고 회사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D은 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계약해지 전 신규 매장 수수료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기간 중 신규 매장을 개설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7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5. 11. 3.무렵 이전에 G 입점 매장 5개(잠실점, 분당점, 강남점, 부산서면, 광복), H 강남점 입점매장 1개, I 입점매장 2개, 신사가로수점 1개 등 총 9개의 신규 매장이 개장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그 밖에 G 대구점, J, M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전에 개장된 신규 매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G 대구점의 개장 시점은 2015. 11.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나아가 그 개장 시점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15. 11. 3.무렵 이전인지 여부는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J, M을 신규 매장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 D은 위 신규 매장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서면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4.2조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계약 제4.2조가 문언상 원고가 서면 승인한 신규 매장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와 피고 회사의 권리의무 내용, 신규 매장 수수료의 성격에다가 이 사건 계약 제 9.4조가 서면 승인 없이 신규 매장을 개장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지권 행사를 원고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

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서면 승인 없는 신규 매장이 개장된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의무는 발생하되, 다만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서면 승인 없이 신규 매장을 개장한 경우에도 수수료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신규 매장 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9개 신규 매장 중 신사가로수점의 경우 2015. 4. 17. 이전에 개장되어 그 신규 매장 수수료가 미화 10,000달러이고, 나머지 8개 매장은 그 이후에 개설되어 신규 매장 수수료가 미화 25,000달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신규 매장 수수료로 미화 210,000달러[=미화 10,000달러(신사가로수점) + 200,000달러(=미화 25,000달러 × 8개 점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연대보증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법률비용 및 출장비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상당의 채무(위 4.가.③채무)에 대하여도 피고 D에게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주채무는 공제하는 금액이 잔존 법률비용보다 커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 D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요지

가) 피고 D의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근보증으로서, 보

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13.1조의 불가항력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3) 피고의 보증은 연대보증이 아니고 단순보증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2) 판단

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¹⁷⁾는 본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을 민법 제429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¹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위 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의 보증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이고, 피고 회사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기업'이며,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보증인

17) 제6조(근보증)

-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18)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건 보증에 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가항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 제13.1조는 불가항력이라는 제목으로, "본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및 본 계약에 따라 A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천재지변, 민간 또는 군당국의 조치, 화재, 파업, 직장폐쇄 또는 노사분규, 유행병, 정부제한, 전쟁, 폭동, 지진, 폭풍, 태풍 및 화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한 그들의 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이행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이행 기간은 해당 지연 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하며, 그러한 지연 사유는 해당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치유되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박탈 사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불가항력 사유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 9.5조에서는 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과 피고 회사, C 등과의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659,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3047, 대법원 2017다268210)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D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달리 C이 피고 D과 사전 협의를 거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사실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C의 업무상배임 등의 행위로 경영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최고·검색의 항변에 대한 판단

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참조) 피고 회사와 원고 간의 이 사건 계약은 상행위이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고, 따라서 피고 D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보증은 연대보증이므로, 단순보증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D의 최고·검색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

피고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137,932,14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¹⁹⁾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미합중국 통화 21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19) 원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피고 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동일하게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D이 보증하는 책임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은 그 지급을 구하는 2017.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발생한다.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별지 1]



6. 위 1. 내지 5.항 표장과 색채를 달리하는 표장. 끝.

[별지 2]

1. 케이크, 빵, 커피음료, 차(茶, tea), 에이드음료, 주스음료, 탄산음료
2. 빵(케이크) 소매업, 빵(케이크)의 컴퓨터온라인주문업, 빵(케이크) 우편주문업,
카페업, 제과점업